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

1. 귀 기관의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  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70%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·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,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,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·해제를 위한 '단계적 일상회복'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- 이에 따라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·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한편,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비롯하여 운영시간 제한, 밀집도 제한 등 아래와 같이, 방역수칙을 완하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.

### <주요 조치 사항>

구분	주요 내용	비고
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유형시설 등 ▲노래(코인)연습장 ▲실내체육시설</li> <li>▲목욕장업 ▲경마·경륜·경정장 ▲카지노(내국인)</li> <li>※ 유형시설 등 : 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콜라텍·무도장</li> </ul>	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
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(운영시간)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</li> <li>▲ (밀집도제한) 시설에 따라 4m<sup>2</sup>당 1명/한칸 띄어 앉기/ 수용인원 50%/제한해제 등 적용</li> <li>▲ (음식섭취) 금지 유지, 단, 영화관(상영관), 실외 스포츠 경기(관람)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</li> </ul>	결혼식 등 일부시설 종전수칙 적용가능
종교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% 가능</li> <li>※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</li> <li>▲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 (취식·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)</li> </ul>	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로 한정
사적모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(수도권) 최대 10명 ▲(수도권 외 지역) 최대 12명</li> <li>※ 식당·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까지 가능</li> </ul>	-

<p>사적모임 외 모임·행사</p>	<p>▲ (1~99명)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         ▲ (100~499명)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         ▲ (500명 이상) 원칙금지,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, 각종 스포츠대회, (지역)축제에 한해 지자체·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</p>	<p>-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

가. 적용 기간: 2021. 11. 1.(월) 0시 ~ 별도 안내 시 까지

나. 적용 지역 : 전국 17개 시·도\*

\*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경과규정

○ 계도기간 부여 :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.11.1. 0시부터 2주간,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

○ 운영시간 제한 유지 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32897(2021.10.15.)」에 따른 식당·카페,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**2021.11.1.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(계도기간 미적용)**

※ 2021. 10. 31. 24시 현재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 중인 경상북도 12개 시·군 (군위군, 의성군, 청송군, 영양군, 청도군, 고령군, 성주군, 예천군, 봉화군, 울진군, 울릉군) 내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은 종전대로(제한없음) 유지 가능

○ '학원' 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32897(2021.10.15.)」에 따라 2021.10.31.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적용 중인 지역은 방역수칙 중 '운영시간 제한(22시~익일 05시 운영 중단)' 조치에 한해 2021.11.21.(일) 24시까지 계속적용

### ①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

-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(5종)
  -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, 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민)
-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(24종)
  - 식당·카페,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오락실·멀티방, 상점·마트·백화점(각 300㎡ 이상), PC방, 스포츠경기(관람)장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실외체육시설, 숙박시설, 파티룸, 도서관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마사지업소·안마소, 이·미용업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, 종교시설
- 고위험장 사업장(2종) : 콜센터, 물류센터
-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- 조치내용 : **방역지침 의무화**

붙임1: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
붙임2: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
붙임3: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

### ② 교통시설

- 대상 시설 :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- 법적 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- 조치 내용 : **방역지침 의무화**
  - 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0199(2021.6.28.)에 의한 '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' 계속 적용

### ③ 국공립시설

- 소관부처·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
- ※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(이용)특성, 방역관리 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, 국공립시설(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) 탄력적 운영가능

#### ④ 모임·행사

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■(사적모임) 수도권 11명 이상, 수도권 외 지역 13명 이상 각각 금지

\* 식당·카페 이용 시 접종 미완료자로만 모이는 경우, 최대 4명까지 가능

■(사적모임 외 모임·행사)

- (1~99명)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·행사 가능

- (100~499명)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

- (500명이상)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 
③ (지역)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·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

※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며,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

<모임·행사 예시>

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각종 (지역) 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
※ 결혼식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

■ (시험) 수험생 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마련,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

\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

#### ⑤ 사회복지시설

○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
#### ⑥ 학교(등교)

○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

3.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,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,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, 유사 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.

4.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(붙임)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, 이메일,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

소속 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5.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  
 2.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  
 3.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.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

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중소기업중앙회, 전국경제인연합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경영자총협회, 한국무역협회, 중견기업연합회, 업종별 협·단체

주무관 유재훈 과장 전결 2021.11.2. 김재준

협조자

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-1256 (2021. 11. 2.) 접수

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산업일자리혁신과 / http://www.motie.go.kr

전화번호 044-203-4222 팩스번호 044-203-4722 / jaehun9110@oma.go.kr / 대국민 공개